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 시 보

www.namwon.go.kr

<b>선 람</b>	기관장

제16호      2016. 4. 08(금)

##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52 호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1

##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48 호 2016년 3월 지방소득세 공시송달 공고 ..... 2
- 남원시 공고 제 2016-51 호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4
- 남원시 공고 제 2016-491 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0
- 남원시 공고 제 2016-491 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32

<b>회 람</b>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개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6년 04월 07일

남 원 시 장

- 1. 사 업 명 : 개간사업
- 2. 사업목적 :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소득증대 기여
- 3. 사 업 비 : 자력사업
- 4. 사업내용
  - 가. 위 치 :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599-8번지, 산599-10번지
  - 나. 사 업 량 : 3,305㎡
  - 다. 사업기간 : 2016. 04. ~ 2017. 03. 31
  - 라. 사업시행자 : 남원시 농고길 \*\*\*(도통동), 이 \* \*
-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 농촌개발(620-63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16 - 487

## 공 시 송 달 공 고

2016년 0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04. 08

남 원 시 장

1. 제 목 : 2016년 0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6. 04. 08. ~ 2016. 04. 22.
3. 납부기한 : 2016. 04. 30
4. 공시송달내용

2016년 0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며, 공시송달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고지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내역 : 붙임

2016년 03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단위:원)

납세자	납세자 번호	과 세 번 호	세액	송달사유	간주납기
(유)강*조경	21****-*****	140003-2016-03-02-***-36	404,000	폐문부재	2016.04.30
(유)송*산업	21****-*****	140003-2016-03-02-***-38	362,680	이사감	2016.04.30
(주)청*건설	12****-*****	140003-2016-03-02-***-39	913,890	이사감	2016.04.30

남원시 공고 제 2016-51 호

###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6. 3. 31.

남 원 시 장



####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1회 발생하여 피해는 114건 749백만원이며, 복구는 114건 289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겨울철 폭설로 인한 1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749백만원 이며 복구는 114건, 289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0개실·과 201명으로 5년 평균보다 13명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명 증가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10종으로 176개소에 설치되었으며, 5년 평균보다 57개소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35개소 증가하였습니다.
- ※ 예방실적 다른 항목도 유사하게 작성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은 258백만원이나 265백만원 확보되어 1 %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라등급으로 안전에 가까우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라등급으로 변경 없습니다.
  -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45개 시설 중 50개시설이 내진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34%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해복구 완료, 내진보강 등은 추진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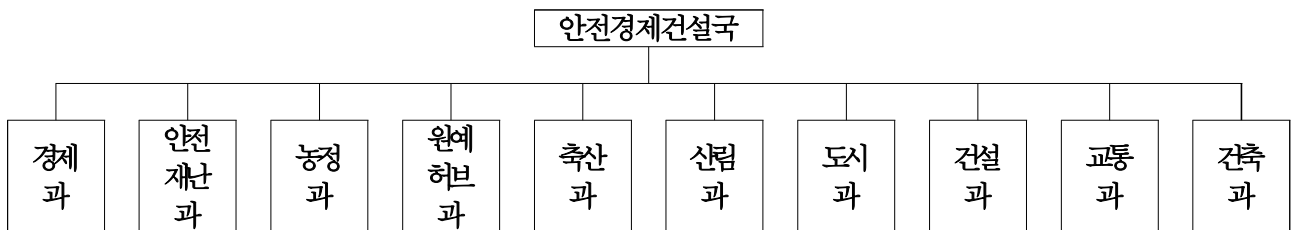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2015.11.26. ~11.27.	폭설	사유시설 114건 - 비닐하우스 58건 - 인삼재배시설 36건 - 표고재배사 4건 - 과수재배시설 7건 - 농작물 8건 - 축산시설 1건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 - 114건/289,676천원	

※ 작성대상 : 복구계획서 수립 또는 재난의 발생에 따른 수습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 재난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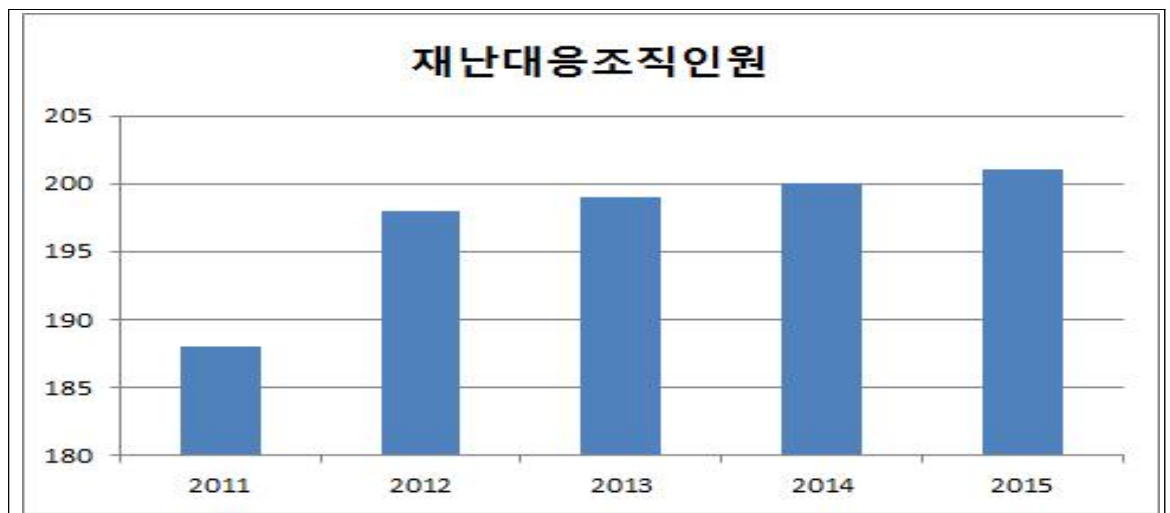


##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 타 (임기제)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11	211	1	10	47	64	51	38	-
	현원	201	198	1	10	55	61	45	26	3
경제과	정원	22	22	1	1	5	7	6	2	
	현원	23	23	1	1	6	6	7	2	
안전 재난과	정원	15	15	-	1	3	5	3	3	
	현원	12	12	-	1	3	3	2	3	
농정과	정원	26	26	-	1	6	10	5	4	
	현원	25	25	-	1	7	8	4	5	
원예 허브과	정원	23	23	-	1	6	7	5	4	-
	현원	23	21	-	1	7	5	6	2	2
축산과	정원	16	16	-	1	4	5	5	1	
	현원	16	16	-	1	5	5	3	2	
산림과	정원	25	25	-	1	5	4	8	7	-
	현원	23	22	-	1	6	5	10	-	1
도시과	정원	20	20	-	1	5	8	5	1	
	현원	18	18	-	1	5	4	3	5	
건설과	정원	20	20	-	1	3	7	4	5	
	현원	19	19	-	1	4	10	1	3	
교통과	정원	19	19	-	1	4	6	2	6	
	현원	17	17	-	1	5	6	4	1	
건축과	정원	25	25	-	1	6	5	8	5	
	현원	25	25	-	1	7	9	5	3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88	198	199	200	201
일반직 현원(인원)	182	193	195	198	198
기 타 현원(인원)	6	5	4	2	3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 담당사무 재조정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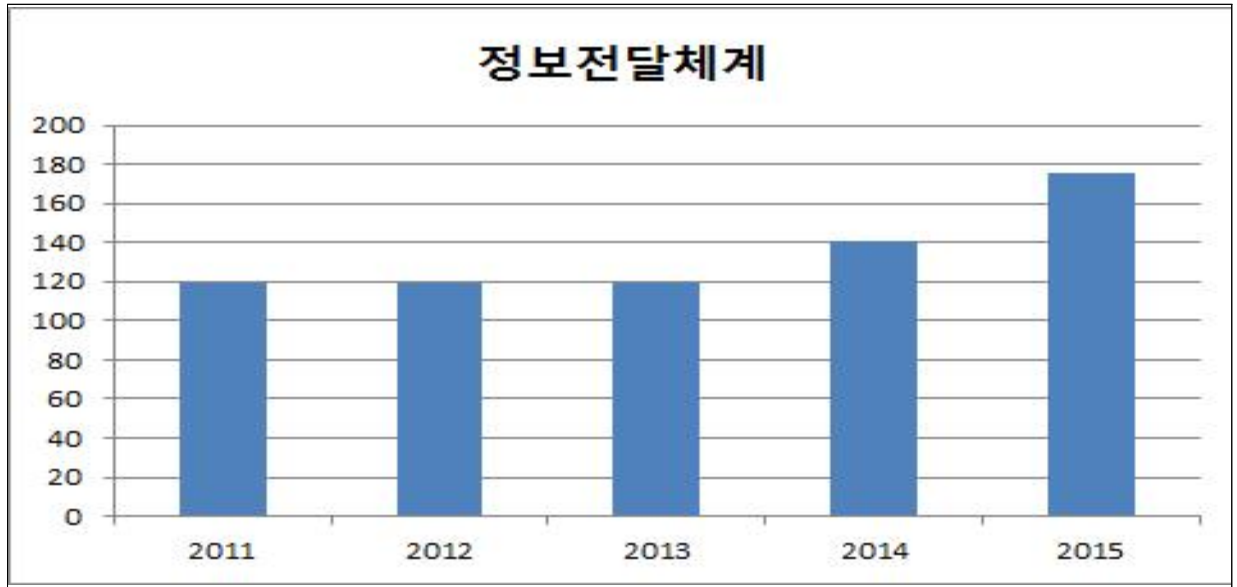
##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13	운봉 수철마을외 112
자동우량경보시설	14	시청감시국외 13
자동우량관측장비	17	시청외 16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2	운봉읍, 보절면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산내면 반야,삼화,축천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4	산내 내령외 13
재해문자전광판	2	산내면 삼화교, 내령솔밭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4	시청,운봉읍,금동,인원면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4	시청,운봉읍,금동,인원면
위성전화기	3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119	119	119	141	17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58	58	58	80	113
자동우량경보시설	14	14	14	14	14
자동우량관측장비	17	17	17	17	17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2	2	2	2	2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3	3	3	3	3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4	14	14	14	14
재해문자전광판	2	2	2	2	2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3	3	3	3	4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3	3	3	3	4
위성전화기	3	3	3	3	3





-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 예경보시스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인명보호와 재산피해 최소화
  - 주요 하천변 재난 취약지부터 연차적 실시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풍수해보험 실무교육	2.5	서울청사	1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교육	2.12	전라북도	1	
맞춤형 재난관리전문교육	15.4.6~7	전라북도	3	
재해재난대비교육	15.4.27~29	전라북도	1	
제1기 재난관리전문교육	15.5.12	전라북도	5	
제3기 재난안전체험교육	4.8	전라북도	3	
특정관리대상시설 담당자 교육	9.3	대전청사	1	
지역자율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11.5~6	전북부안	1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교육	11.27	경기도고양	1	
재난상황접수 및 매뉴얼관련 교육	12.2	전라북도	1	
재난복구·구호·보험분야 담당자교육	12.8	광주광역시	1	

##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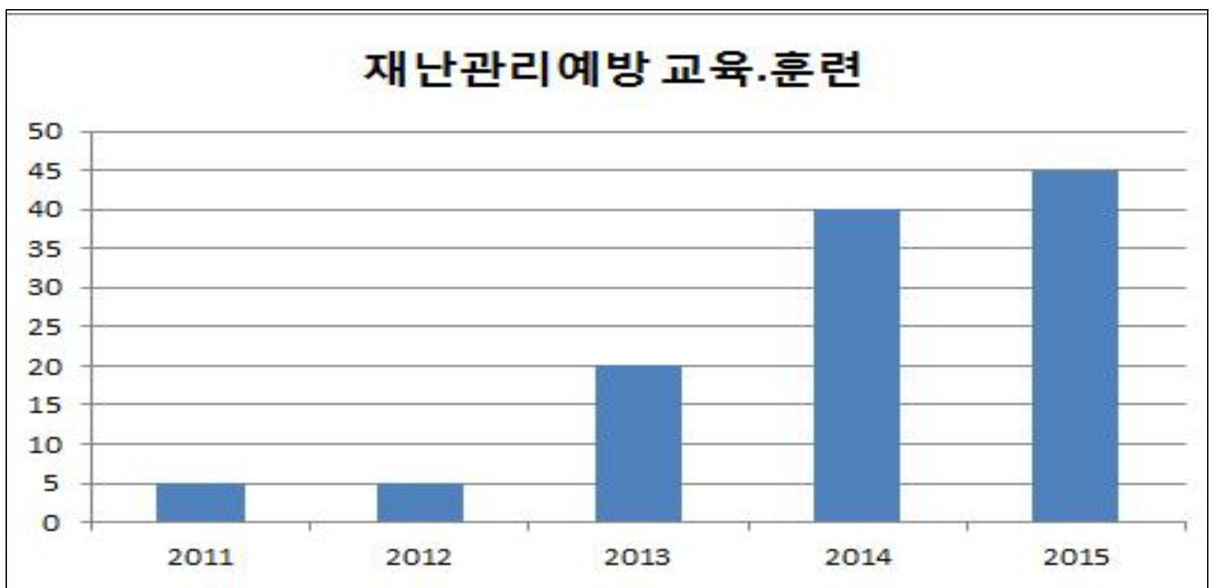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7.21	전남	2	재난구호분야교육	도	
10.26	부안	2	직무능력강화교육	도	
11.3	도청	41	방재단연합회	도	

## 다. 재난관리예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12.3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0	교통, 보행안전, 소방, 심폐소생술 등	전라북도	
찾아가는 안전도우미 양성교육	12.10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00	교통, 보행안전, 소방, 심폐소생술 등	전라북도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	5	20	40	45



-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 훈련 필요성의 재 인식

##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5.1	임실119안전 체험관	2	지진, 태풍, 심폐소생술 등 재난월드체험	전라북도	
10.20	전주 국립 무형유산원	10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방안 등	전라북도	

##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534	110	110			

##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제227차 안전점검의날	설명절대비 캠페인	2.16	공설시 장	47	
2	제228차 안전점검의날	봄철해빙기 안전점검	3.4	공설시 장	49	
3	제229차 안전점검의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4.3	공설시 장	37	
4	제230차 안전점검의날	지역축제 관련	5.4	공설시 장	47	
5	제231차 안전점검의날	여름철대비 풍수해	6.4	공설시 장	47	
6	제232차 안전점검의날	물놀이 안전사고	7.3	공설시 장	47	
7	제233차 안전점검의날	풍수해 및 폭염대비	8.4	공설시 장	47	
8	제234차 안전점검의날	추석맞이 안전점검	9.7	공설시 장	47	
9	제235차 안전점검의날	행락철맞이 캠페인	10.8	공설시 장	42	
10	제236차 안전점검의날	불조심강조의달	11.4	공설시 장	47	
11	제237차 안전점검의날	폭설,설해대비	12.9	공설시 장	47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일시	언론사	비고
1	안전하고 편안한 설명절 캠페인	설명절 캠페인	2.16	지역신문	
2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 홍보	봄철 화재예방	3.30	“	
3	건조기 화재 취약지역 대상으로 화재예방 교육 실시	건조기에 따른 산불등 화재예방	4.9	“	
4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으로 '안전한 남원시' 만든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중 안전점검	4.15	“	
5	중점관리자원 확인의날 행사	재난시 자원관리	4.28	“	
6	빈틈없는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5.7	“	
7	안전한 남원을 위한 재난대응 훈련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실시	5.19	“	
8	심보균 전북도행정부지사 정송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정송지구 현장점검	5.29	“	
9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안전 남원 조성 박차	재난취약시설점검	6.15	“	
10	여름철 폭염대비 종합대책 9월말까지 추진	폭염대비 캠페인	6.23	“	
11	추석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실시	추석대비 안전점검	9.22	“	
12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총력	겨울철 재난대비	11.12	“	
13	안전한 남원, 시민과 함께 만든다	안전신문고 앱 활성화	11.24	“	
14	남원시 공무원 시민의 안전 위해 눈치우기 나서	남원지역 눈치우기행사	11.27	“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장홍보실적(횟수)					14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14

##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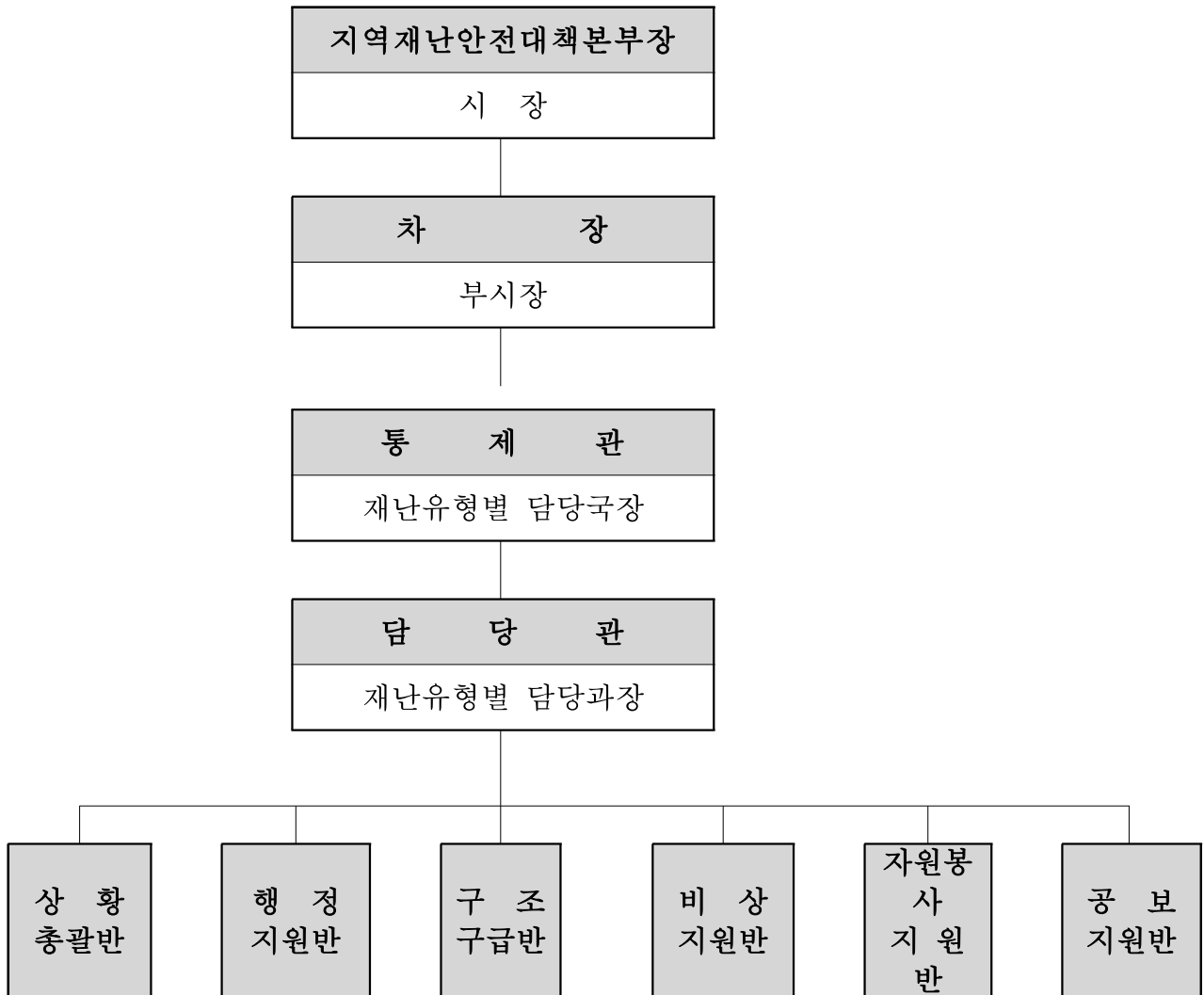
####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남원시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시장</li> <li>• 위원 : 19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li> <li>• 해당 지역에서의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li> <li>•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li> <li>•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지역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li> </ul>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부시장</li> <li>• 위원 : 19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li> <li>•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li> </ul>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본부장 : 시장</li> <li>※ 위기 단계에 따라 인원조정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li> <li>•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ul>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복구지원담당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li> </ul>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복구지원담당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li> <li>• 시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li> </ul>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안전재난담당외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li> <li>• 시장·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li> </ul>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조직



###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재난과)
  -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복지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환경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홍보전산과)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해당 실과)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과)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홍보전산과)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재난과)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과)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소)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총무과)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남원경찰서)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남원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유해화학물질]

####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2.14.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005.02.1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2.11.16.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남원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2.14.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1999.01.28.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5.09.29.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14.01.02.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조례	◦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2006.02.10.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06.02.10.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	2013.05.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2013.11.11.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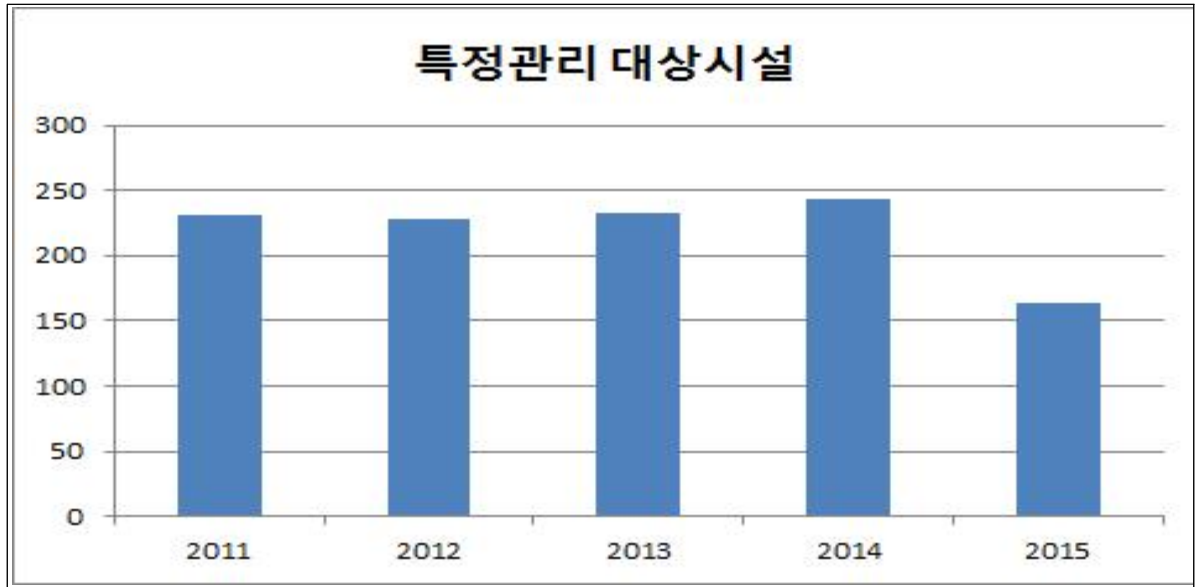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교량	매립기우행구역	수상레저	유원지	토목공사장	소계	아파트	공동청사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휴게시설		기타
164	27	24	0	2	1	0	137	96	10	7	5	2	17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164	164	132	19	13	-	-	-	
시설물	27	27	5	12	10	-	-	-	
건축물	137	137	127	7	3	-	-	-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31	228	233	243	164
재난위험시설	1	1	1	0	0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 개정(2015년) -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2.15~4.30	243	243	-	해당부서	-
하반기	9.21~11.30	164	164	-	해당부서	-

-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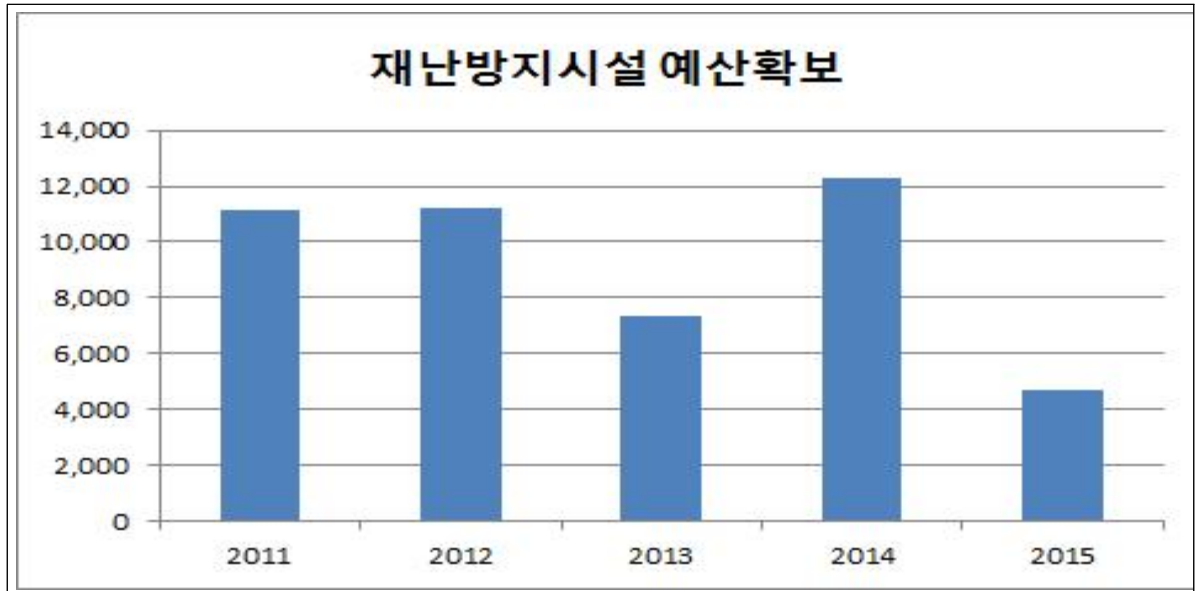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계				4,732	
남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백면 남계리 일원	배수로 L=3.2km	2014. ~ 2015.	2,500	침수예방
송동부석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	송동면 장국리	배수로 L=854m	2015.3~20 15.7.21	330	침수예방
덕과사울2지구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덕과면 사울리	옹벽 L=355m	2015. 11~ 2016. 5	1,000	붕괴위험
용궁지구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	주천면 용궁리	옹벽 L=150m	2015. 11~ 2016. 5	600	붕괴위험
아영지구재해예방사업	아영면 구상리	배수로 L=50m	2015. 11~ 2016. 5	100	재해예방
절개지보수공사	아영면 갈계리일원	옹벽블럭 A=231㎡	2015.12.~ 2016.03	96	재해예방
대강양촌지구재해예방사업	대강양촌지구 재해예방사업	암거설치 L=27m	2015.03.~ 2015.06.	106	재해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1,170	11,190	7,331	12,252	4,732



-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 풍수해피해(재해) 감소 및 재해사업 침수 및 재해예방을 통한 지역주민의 인적·물적 재산보호를 위한 사업비
  -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웁스	유흡착제	흡착롤	유처리제	마대	
		km	천매	km	kl	천매	
총계	4종	240	4,500	48	6.14	20	

[의료시설]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145	204	386	10	1,621	16
병원	7	69	167	8	1,476	12
보건소	40	32	42	1		
기타	98	103	177	1	145	4

## [수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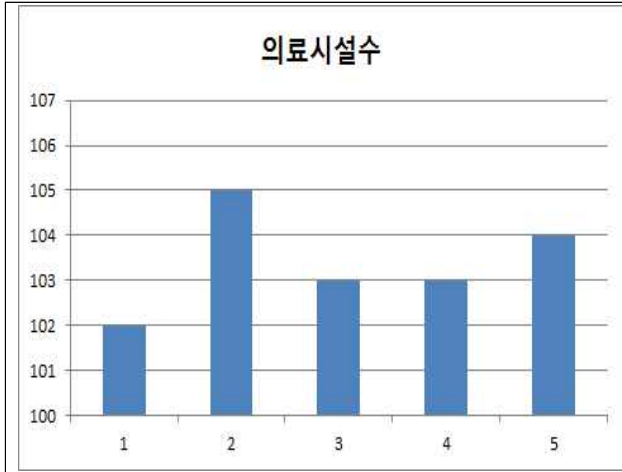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22	3,265	21	3,238	1	27						

##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오일웁스	200	210	230	240	240
유흡착제	2,500	3,000	4,000	4,500	4,500
흡착롤	30	32	40	48	48
유처리제	5.0	5.3	6.0	6.14	6.14
마대	5	7	7	10	20

##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의료시설수	102	105	103	103	104	
수용시설	개소	8	8	9	7	7
	수용인원	1,675	1,675	1,745	1,322	1,621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 요양병원 신규개설(다사랑요양병원)

##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 구조장비

구분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보트	구명환	구명조끼
총계	158	2				2	77	77

###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우저	덤프	청소차		
총계	137		56	5	55	21		

###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진화도구	무전기
총계	1,753			6	8	58	1,500	181

###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사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총계	312	42	9	235	5	4	2	15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구조장비			154	158	158
복구장비			170	158	137
산불진화장비			1,486	1,486	1,753
기타장비			312	312	312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249	58	72	2	116		1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착암공	절단공	용접공	철근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인원	35	14							20	1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단체	35	22	2	1	2	2	1	1	1	1	1	1
인원	7,073	730	29	27	48	40	400	2,640	290	64	2,332	47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기술인력				249	249
기능인력				35	35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7,073	7,073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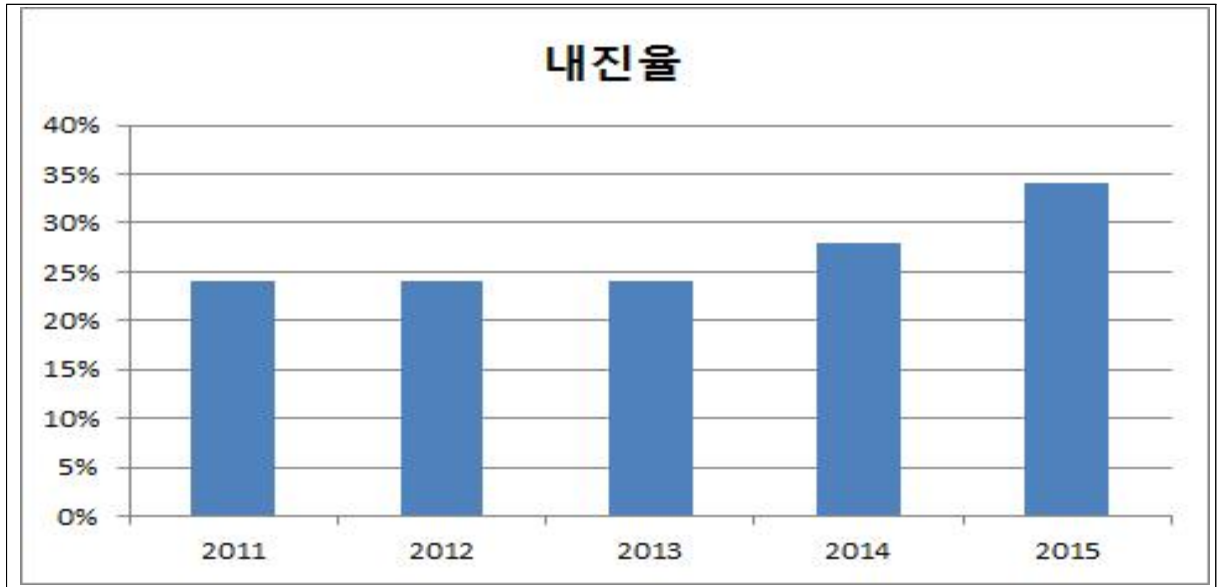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재난관리실태점검	2015.12.14. ~2015.12.15.	국민안전처	미흡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5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계	145	50	-	-	34%
공공건축물	44	17	-	-	38%
도로시설물	80	13	-	-	16%
수도시설	9	9	-	-	100%
폐기물매립 시설	9	9	-	-	100%
공공하수처리 시설	3	2	-	-	67%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내진율	24%	24%	24%	28%	34%



-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내진 실적 및 내진율 향상됨
  -

###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여	여	여	
종합상황실	여	여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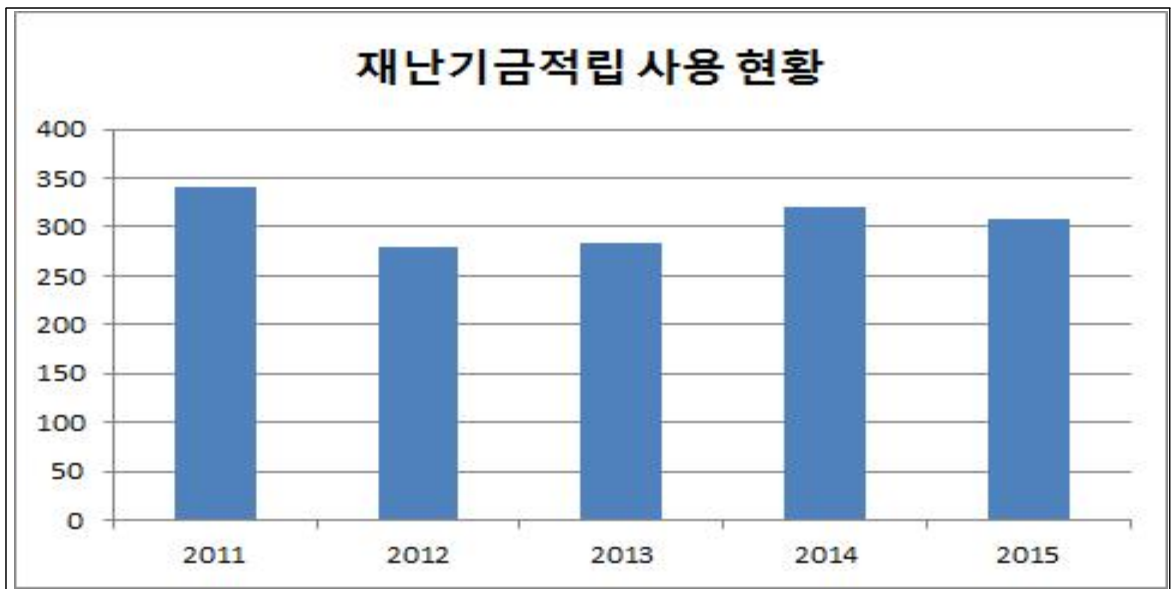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 설명

###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258 백만원	258 백만원	308백만원	125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확보액		340	280	284	321	308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6	8	26	31	35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	-	-	2	2
	재난피해시설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	-	9	-	-	7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	1	2	3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족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	-	-	6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전북도의 소규모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업 신청요청(치수방재과-10302)으로 인한 도 보조금 확보
  -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대응을 위한 손소독제 등 구입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영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안전재난과	2014	위기대응 수준별 조치사항 위기대응 조치 및 절차
지진	안전재난과	2014	"
대형화산폭발	안전재난과	2014	"
산불	산림과	2014	"
유해화학물질사고	환경과	2014	"
대규모수질오염	환경과	2014	"
댐붕괴	안전재난과	2014	"
고속철도대형사고	교통과	2014	"
다중밀집시설건축물붕괴	건축과	2014	"
가축질병	축산과	2014	"
감염병	보건소	2014	"
정보통신	홍보전산과	2014	"
전력	경제과	2014	"
보건의료	보건소	2014	"
육상화물운송	교통과	2014	"
정부중요시설(지자체청사)	총무과	2014	"
도로터널사고	건설과	2014	"
항공기사고	교통과	2014	"
가스수급	경제과	2014	"
문화재사고	문화관광과	2014	"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지진재난 현장 조치 매뉴얼	2015.03.26.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변경	
풍수해재난 현 장조치 매뉴얼	2015.03.26.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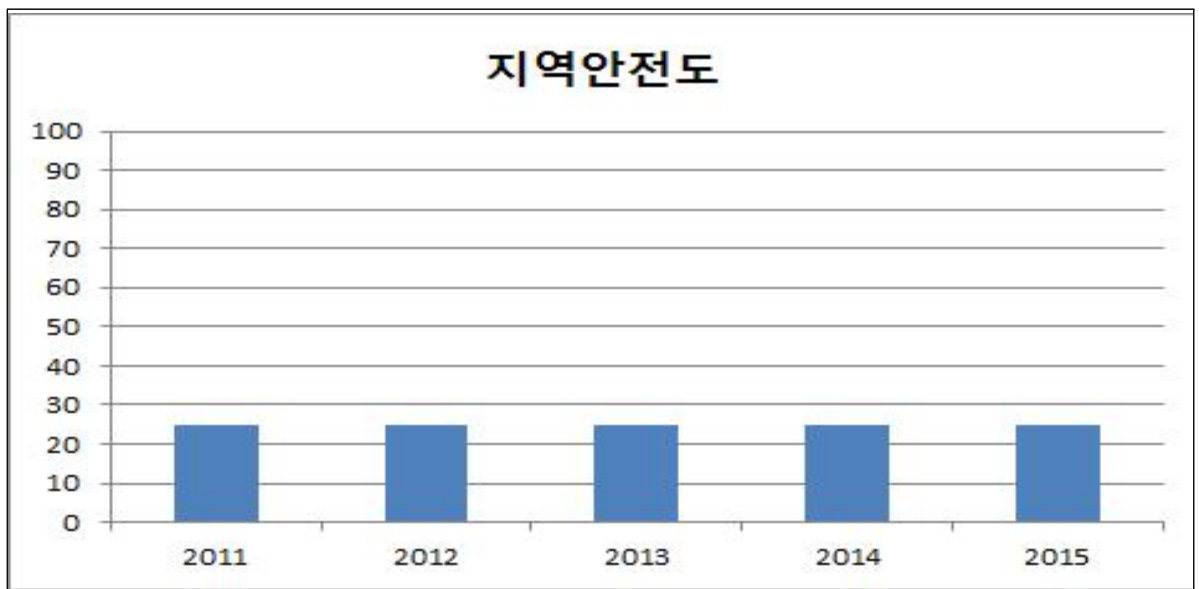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520	0.824	0.756	라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등 급	라	라	라	라	라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증감없음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 지 구 명 : 주천용궁지구
- 지정·고시일 : 2015. 3. 20.
- 위     치 :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519번지 일원
- 지정내용 : L=168m, H=12m
- 지정등급 : D등급
- 관 리 자 : 남원시장(안전재난과)

- 지정사유 :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지 구 명 : 주생 정송지구
- 지정·고시일 : 2015. 2. 2.
- 위      치 : 남원시 주생면 정송리 122-1번지 일원
- 지정면적 : 110,000m<sup>2</sup>
- 지정등급 : “나”등급
- 관 리 자 : 남원시장(안전재난과)
- 지정사유 : 재해위험지역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남원시 안전재난과(담당자 : 박영환, 전화 : 063)620-6954 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공고 제 2016 - 491 호

#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처분하고자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4. 06.

## 남 원 시 장

- 1. 제 목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 공시송달
- 2. 공고기간 : 2016. 04. 7 ~ 4. 20 (14일간)
-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도붙임
-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공매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내에 남원시청 재정과로 연락바라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 의 처 : 남원시청 재정과 징수팀 (☎063-620-6285)

### 공매예고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이름	주소	물건종류	압류물건	압류설정일	채납건수	채납금액
계	8명					117	19,124,410
1	조*호	남원시 비*길 72	토지	남원시 주천면 송치리 산16 일야 19,537㎡	2008-10-24	13	1,202,250
2	주식회사선*	남원시 시*길 99-18,	03 토지건물	1.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220-1 비안노암아파트 제13층 제1311호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15층아파트 지하층 1144.5066㎡ 주차장 지하층 716.94㎡ 대피소 1층 838.08㎡ 아파트 2층 834.3㎡ 아파트 3층 834.3㎡ 아파트 4층 834.3㎡ 아파트 5층 834.3㎡ 아파트 6층 834.3㎡ 아파트 7층 834.3㎡ 아파트 8층 834.3㎡ 아파트 9층 834.3㎡ 아파트 10층 834.3㎡ 아파트 11층 834.3㎡ 아파트 12층 763.11㎡ 아파트 13층 763.11㎡ 아파트 14층 763.11㎡ 아파트 15층 763.11㎡ 아파트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기계실 및 기계실계단, 정화조계단, 엘리베이터장소지하 46㎡1층 32.7575㎡	2014-09-17	26	13,171,130
3	안*두	남원시 이백면 닭*길	토지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432-1 답 446㎡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516 답 1365㎡ 전라북도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533-1답 281㎡	2014-04-09	11	1,060,900
4	정*식	인천광역시 중구 축*대로 234,	토지	남원시 향교동 산3-1 일야 7,022㎡	2012-02-29	7	1,093,930

5	박*상		토지	①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380-1 잡종지 301㎡ ②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 귀석리 380-3 잡종지 839㎡	2008.11.27	18	1,987,180
6	임*철	서울특별시 도*구 도봉로 139길	토지건물	전라북도 남원시 산곡동 15-2 지리산하이츠콘도미니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2층 제5층 제510호 철근콘크리트조 33.60㎡, 동소대지권 9953분의 36.19, (임문철지분전부)	1999-05-18	13	609,020
7	이*재	남원시 어*길 38-28	토지건물	전라북도 남원시 노암동 597-21 대 238㎡	2014-01-15	6	1,019,850
8	신*호	대전광역시 중구 당*로 124번길	토지건물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15전 1464㎡ 전라북도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216전 1569㎡	2015-03-30	23	654,130



남원시공고 제2016-497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8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 명시
- 상급자의 부당지시 불이행 구제 규정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확대
- 외부강의 등의 대가 기준액 및 외부강의 등 한도 제한
-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응을 위한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등

- 공직유관단체 등에 직·간접적 인사 청탁 금지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시 환수 조치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대상 확대
-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등 사적인 접촉 제한
-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2. 주요내용

1. 행동강령 적용 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 (안 제3조)

-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행동강령 준수 의무 이행주체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의 적용 범위에 보건의사 명시
- 2. 상급자의 부당지시 불이행 구제 규정 신설 (안 제4조 제6항)
  - 부당지시 불이행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
- 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자 확대 (안 제5조 제1항 제4호~제6호)
  -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
  - 학연, 지연, 종교, 직연, 채용동기 등 지속적 친분관계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 4. 공직유관단체 등에 직·간접적 인사 청탁 금지 신설 (안 제9조2)
  -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 직·간접적인 인사 청탁 금지
- 5.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개정 (안 제13조 제2항)
  - 공용물 사적 사용 시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 환수 조치
- 6.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개정 (안 제14조의2)
  -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대상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 7. 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신설 (안 제14조의3)
  - 각종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 요구 금지
- 8.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안 제14조의4)
  - 직무관련자와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금지
  -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 시 사용등록부에 실명 기재
- 9. 외부강의 등의 신고 개정 (안 제15조 제2항~제4항)
  - 원고료가 포함되지 않은 대가 기준 상한액을 원고료 포함된 기준으로 개선
  - 월 3회 또는 월 6시간 초과 금지
    - 부득이 기준 초과 시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 검토 및 시장 승인 필요

10. 부패공직자 제재현황 공개 처리 조항 변경 및 신설 (안 제21조 제2항)

- 시 홈페이지 내 공개 (개인정보 제외) 신설

11.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조항 변경 및 개정 (안 제22조)

- 외부강의 대가 기준 초과 수수 시 초과금액 즉시 반환
-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 처리결과 홈페이지에 공개

### 3. 참고사항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감사실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781),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4.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감사실(☎063-620-69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령”을 “규칙”으로, “남원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남원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령”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무원”을 “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그 밖에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직유관단체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 중 “때에는”을 각각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

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상당”을 “상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에 관하여”를 “등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을 “시장”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시 소속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제7조 중 “남원시에”를 “시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당등으로부터”를 “정당 등으로 부터”로, “기재한”을 “적은”으로 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지원·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예산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었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채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제2항** 본문 중 “당해업무”를 “해당업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당해업무”를 “다만, 해당 업무”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선박·항공기”를 “건설중기·청사·관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용물을 사적 사용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내의”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그밖에”를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내의”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나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이었던”을 “사람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3항까지”로 한다.

제14조의2 본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

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또한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1항”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 제2항 중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를 “붙여”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따라”를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를 “등 즉시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령의 교육을”을 “강령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남원시의”를 “시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의2호 서식]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 신고서			
신 고 자	소 속		성 명
	직급(위)		전화번호
신 고 내 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골프 <input type="checkbox"/> 사행성 오락 <input type="checkbox"/> 여행		
일 시		장 소	
참 석 자	※ 소속, 직책, 성명 기재		
비용부담	※ 본인여부, 카드 사용여부 등 기재		
사 유			
비 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span>위 신고인</span> <span>○○○ 인</span> </div>			

[별지 제1의3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접수·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 고 내 용				결재			비고
		소속	직급 ( 직 성명 위)	성명	일시	장소	참석자	사유	담당자	담 당	행동 강령 책임관	

[별표]

## 외부강의·회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구 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상한액	4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시간당 받을 수 있는 상한액	300	120	100	

- \* 강의시간 산출기준 :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 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 동 기준은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 상한액에는 원고료를 포함한 금액임
-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 가능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강령</u>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u>남원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규칙</u>----- ----- ----- ---- <u>남원시 소속 공무원</u>---- ----- ----- -----.</p>
<p>제2조(정의) 이 <u>강령</u>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u>규칙</u>----- -----.</p>
<p>1. "직무관련자"란 <u>공무원</u>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u>자로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1. ----- <u>남원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u>사람으로서</u> ----- ----- -----.</p>
<p>가. ~ 사. (생략)</p> <p>아. <u>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u>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p>	<p>가. ~ 사. (현행과 같음)</p> <p>아. <u>그 밖에 행정기관</u>----- ----- -----</p>
<p>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p>	<p>2. ----- -----</p>

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신설>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남원

-----  
-----  
-----  
-----  
-----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3. -----  
-----  
-----  
-----  
-----  
----- 그 밖에 -----  
-----.

4. (현행과 같음)

5. "공직유관단체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기관,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

시 소속 공무원(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남원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속 공무원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경우에는 -----  
-----.

③ -----  
-----  
-----  
-----  
-----  
-----.

경우에는 -----  
-----.

④ (현행과 같음)

⑤ ----- 따른 -----  
----- 상  
용-----.

<신 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  
 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  
 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  
 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  
 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 설>

⑥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  
 떠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시장은 지시를 따르  
 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  
 -----  
 -----  
 ----- 등을 -----  
 -----  
 -----  
 -----  
 -----  
 ----- 시장 -----  
 -----  
 ----- 예외로 한  
 다.

1. ~ 3. (현행과 같음)
4.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  
 서에서 근무하였던 시 소속  
 퇴직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5.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 동기 등 지속적으로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납원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

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6.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  
----- 시에 -----  
-----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  
----- 정당 등으로 부터 -----  
-----  
----- 적은 -----

호 서식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

<신설>

-----  
-----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공직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 제한) ① 공직유관단체 등을 지휘·감독·규제·지원·감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인사·예산에 관하여 법령상·사실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그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공무원 자신의 가족이 공직유관단체 등에 채용되었을 경우 시장은 공직유관단체 등의 장에게 채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하는 등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신 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1인당 3만원 이내의)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 5. (생략)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허용하는

공용물을 사적 사용한 경우 공용재산 사적 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  
-----  
-----  
-----  
----- 예외로 한다.

1. -----  
-- 따라 -----
2. -----  
----- 이내--  
-----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생략)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1인당 3만원 이내의)의 선물

3. ~ 9. (생략)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  
 -----  
 -----  
 ----- 이내 -----

3. ~ 9.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  
 -----  
 -----  
 -----.

④ -----  
 ----- 제3항까지 -----  
 -----  
 -----.

제14조의2(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 및 그 배우자와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직계 존·비속-----  
-----  
-----  
-----  
-----.

제14조의3(협찬을 요구하는 행위의 금지) ①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② 공무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4(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3.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사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 1의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 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 받은 사항을 별지 제 1의3호 서식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  
-----  
-----  
-----

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 (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  
 -----  
 -----  
 -----  
 -----  
 ----- 따라 -----  
 -----

-----  
 -----  
 ----- 예외로 한다.

② -----  
 -----  
 -----  
 -----  
 -----  
 ----- 또한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 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



<신 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생략)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채무보증의 제한) 공무원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생략)

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  
-----  
-----  
----- 따라  
-----.

<삭 제>

제2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1조(징계 등) (생략)

<신설>

제2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

② ----- 사  
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징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 징계처분 결과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 받거나  
제15조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  
여 대가를 받은 -----  
-----  
----- 붙여 -----  
----- 따라 -----  
-----.

② -----  
-----  
-----  
-----

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의 경우 신고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3조(교육)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  
----- 시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  
품 등을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등은 -----  
-----  
-----.

----- 등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  
에는 처리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교육) ① -----  
-- 공무원에게 -----  
-----  
-----  
-----.

② -----  
----- 강령을 교육 -----  
-----.

<신 설>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생 략)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남원시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생 략)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징계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집합교육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시 소속  
-----  
-----  
-----  
-----  
-----.
- ③ (현행과 같음)
- ④ -----  
----- 따라 ---  
-----.

제25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